

생태계분야 국제환경협약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유엔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된 이래 범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후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분야의 중심목표를 단순한 환경보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합물, 생태계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구속력을 갖는 협약채택이 가속화되어 왔었다. 이번호에는 생태계분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리에 관한 협약, △습지보호협약에 대한 내용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부>

I. 생물다양성협약

■ 개요

1. 공식 명칭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채택배경 및 의의

1) 채택 배경

-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 확대
 - 1600년대 이후 멸종 속도는 그 이전 과거화석으로 확인된 멸종 속도보다 50-100배 빨라지는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감소위기의 확산
 - 생태계 안정의 기반과 식량 및 의약품등 인류 복지의 문제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관한 인식 확대
- 개도국, 생물다양성의 주권적 자원화 필요성 각성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획득하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평히 배분할 것을 주장
- 2) 의의
-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동 생물종에 대한 이용국의 접근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종의 보유, 이용과 관련 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의 모태가 됨.

3. 채택 및 발효 경과

1) UNEP 제14차 집행이사회 결정

- 생물다양성 협약체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실무그룹 구성

2) 3회의 특별실무그룹회의 개최(88-90)

3) 7차에 걸친 협약 협상회의 개최(90.11-92.5) : 제1차 및 2차는 법률 및 기술전문가 회의, 3차 이 후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4) 92. 5. 22. 케냐 나이로비에서 Final Act 채택 (제7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5) 92. 6.13. 브라질 리우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서명(아국 포함)

6) 93.12.29. 협약 발효(30개국 비준서 기탁후 90일)

7) 94.10. 3. 우리나라 가입

8) 98. 3. 현재 171개국 비준(주요 미가입국 : 미국, 태국 등)

4. 협약의 목표

- 1) 인간의 경제개발활동에 의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자원의 손실 및 생태계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
- 2)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
-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사용국가간 공평하게 배분

■ 협약의 주요내용

1. 협약의 목적(제1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

2. 용어의 정의(제2조)

1) “생물다양성”

육상, 해상 및 수중생태계와 이를 생태계가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

2) “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

3) “유전자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3. 협약의 원칙(제3조)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 보유

4. 의무

1)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내지 제14조)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 현지내 보전(in-site conservation) 및 현지외 보전(ex-site conservation) 조치 강구

○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는 경

우에 한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 준수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도입

3)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

○ 개발도상국의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

※ 단, 특허 및 그밖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인정하며 그려 한 보호와 합치되는 조건으로 접근 허용 및 기술 이전

○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자원의 이용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취함.

4)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기초로 한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도입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도입

5) 보고서 제출의무(제26조)

협약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와 동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

6) 재원 및 재정체계(제20조 및 제21조)

○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대한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 수립 및 그 운영을 위한 체도적 조직을 제1차 당사국 총회시 결정

- 이 협약 발효일부터 제1차 당사국 총회시까지 또는 당사국 총회가 제도적 조직을 지정할 때까지는 지구환경금융(GEF)이 임정적으로 체도적 조직의 역할 수행

○ 이러한 재정체계에 선진국인 당사국은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 제공 가능

■ 협약체결후 동향

1. 제1차 당사국총회(94.11.28-12.9, 바하마 낫소) 주요결과

- 1) 협약 재정체계 운영기구 선정(잠정)
 - 차기 당사국회의까지 GEF를 임시 재정기구로 인정하되 여타의 재정기구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차기회의에서 최종 결정
 - 또한 재원활용에 관한 정책, 사업우선순위,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재정부담을 지는 선진국 목록 결정
- 2)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SBSTTA) 설치
 - SBSTTA 설치를 결정하고 의장단수(10명), 제1차 회의 개최('95.9) 등에 합의
- 3) 당사국총회 중기 작업계획('95-'97) 채택
 - '95-'97간 당사국회의 중기 작업계획 채택 및 차기회의에서 진전상황을 고려, 동 작업계획을 재검토키로 결정
- 4) 생명공학안전(Biosafety)에 관한 의정서
 - 당사국회의 중기작업계획의 일환으로 동 의정서의 필요성 및 형태를 2차회의에서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개시토록 결정
- 5) 클리어링하우스 체계 설치
 - 클리어링하우스를 설치하며 그 운영재원은 사무국 정규예산과 기타 자발적 기여로 충당하되 구체적 방안은 제2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키로 함.

2. 제2차 당사국총회(95.11.6-17, 자카르타) 주요결과

- 1) 생명공학안전의정서(Protocol on Biosafety) 협상개시 결정
 - 유전공학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개량 농·수·축산물, 의약품 등)의 국제 교역규제를 위한 의정서 협상을 개시키로 함.
- 98년까지 초안협상을 완료 예정(99년도 의정서 채택 목표)
- 2)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전문가 roster 가동

- 3) 정보교환을 위한 클리어링하우스 체제 시범가동
 - 유전자원·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클리어링하우스 체제를 96-97년(pilot phase)간 시범 운영 후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결정키로 함.
 - 4)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국제규범 협의 개시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배분(ABS : Access and Benefit Sharing) 규범 마련을 위한 협의를 97년 당사국총회시부터 본격화하기로 결정
 - 5) 식물유전자(농업), 산림문제 포괄 협의
 - FAO의 식물유전자회의, CSD의 산림패널 작업과 연계체제를 구축,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FAO 및 CSD 논의가 진행되도록 협약차원에서 input을 제공키로 결정
 - 6) 사무국소재지를 몬트리올로 결정
 - 몬트리올, 제네바, 마드리드 등 4개 경합지간 3차 투표경선을 통해 몬트리올로 최종 결정
 - 7) 국가보고서 제출시기 결정
 - 제1차 국가보고서를 97년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국의 일반조치 이행현황(협약 제6조)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
 - 8) 재정기구
 - GEF를 협약의 항구적 재정체계화하는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GEF를 임시기구로서 계속 인정키로 함.
- ### 3. 제3차 당사국총회(96.11.4-15,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결과
- 1) 클리어링하우스 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 CHM의 시험단계(Pilot Phase)를 98년 말까지 1년 연장
 - 2)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협약 제6조 및 8조의 이행)
 - 개별국가의 협약 제6조에 근거한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이행필요성 강조
- 제1차 보고서 시한을 97년 말로 결정
 -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정 보

- FAO의 「식량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약」을 생물 다양성협약과 조화되도록 발전시킬 필요성 인식
 - 당사국, 국제기구 등이 협약 제15조(유전자원 접근과 혜택 공유)와 관련하여 시행중이거나 개발중인 정책수단, 지침등에 관한 정보를 제4차 당사국 총회(COP) 5개월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토록 촉구
 - 4)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96. 6. Leipzig 식량유전자원회의의 전지구적 실천계획(GPA)등 FAO 논의결과 수용
 - FAO의 「식량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약」을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정서로서 편입할 가능성을 검토해 주도록 FAO에 요청
 - 5) 전통지식(협약 제8조 j항) 관련내용의 이행
 -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토착지식, 혁신, 관행에 대한 토착주민의 국내법상 접근통제권 인정
 - 6) 제2차 총회 작업관련 후속문제(재정)
 - 총회 재정관련 규칙중 제4조 및 40조의 검토를 차기 제4차 총회 논의과제로 결정
 - 7)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문제
 - 97년중 2차례의 의정서 작성회의 개최를 승인하고 98년중 작업을 종료하기 위한 충분한 횟수의 회의개최를 결정
 - 8) 지적재산권
 - 개별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CHM, 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협약목적 달성을 대한 영향, 지적재산권과 토착지식과의 관계를 고려, 검토하여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권고
 - 9) 협약과 GEF간 양해각서
 - 양해각서안을 채택하고 GEF 이사회에 송부키로 결정
- 총회와 GEF의 승인 즉시 발효
- 우리나라 관련사항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기본입장
 - 1) 국가주권원칙과 생물자원보존의무
 - 생물다양성을 'Common heritage of mankind'
 - 가 아니라 'Common concern of mankind'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
 -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주장이 가능케 된 반면, 동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조화 필요성 대두
- 2)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협약의 2대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련의 원대한 의무 규정
 -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배려, 이를 분리하여 지속가능한 이용문제를 별도로 정의
 -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국의 의무사항은 포괄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락하는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비구속적 성격으로 규정
 -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 수립, 집행 필요성 대두
- 3) 접근권(Access) 문제
- 협약의 가장 큰 쟁점은 3가지 사항에 대한 접근권 문제임.
 - 유전자원에의 접근
 - 생물자원 보존 및 생명공학기술에의 접근
 - 유전자원의 사용으로부터 획득한 이익 배분에의 접근
 - 유전자원에의 접근문제
 - 동 협약의 챕터 이전까지는 유전자원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조류(The FAO Global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Plant Genetic Resources)
 - 생명공학기술의 진보가 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해 더욱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획득되는 이익이 기술보유국에게만 돌아가는 상황과 관련, 유전자원의 주권을 처인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자국 유전자원 이용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주권적 결정권 주장 및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

정 보

공 유문제를 협약차원에서 제도화 희망

- 동 협약은 유전자원접근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결정권을 분명히 인정한 반면, 접근을 용이하게 할 보유국의 의무는 “노력한다”는 정도로 규정하여, 보유국과 협상없이는 접근이 불가능
 - 우리나라 보유 유전자원의 목록화를 통한 유전자원 권리화에 대비 및 타국 보유 유전자원의 입수와 접근권 확보노력 필요
- ※ 유전자원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 제약에는 반대입장

○ 유전자원 기술에 대한 접근

- 유전자원관련기술에의 접근이나 이전문제는 동 협약 협의과정에서 선·후진국간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사안
- 심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기술접근과 관련 일 반적인 원칙들만 나열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이전 효과는 미미
- 우리나라는 생물자원보전 및 유전공학 기술에의 접근을 장려하는 입장.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 이전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자는 입장

4) 생명체의 특허인정문제

- 생명공학분야의 투자를 저해하는 반기술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신품종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으나, 로열티 지불에 따른 상품가격의 상승,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공연구의 지장초래, 새로운 유전자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바탈 등의 이 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목록화 작업이 미진하고 식물종이나 동물종에 대해 희귀성, 문화재적 성격에서 천연기념물 등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며, 상업적 차원의 보호제도는 미진한 바, 향후 신품종 종자에 대한 특허권 보호제도의 강화 필요

5) 생명공학안전 의정서(Protocol on Biosafety)

- 선진국들은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의 국제적인 조화를 목적으로 의정서 제정에 참여

중이나 개도국들은 자국이 선진국 생명공학 제품의 실험장 및 시장화되는 것에 반대, 강력한 메카니즘 마련 요구

- 우리나라는 의정서 마련에 반대하지 않으나 생명공학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2개의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6) 토착민 지식보호

- 선진국들이 현 지적재산권제도 고수입장으로 토착민 지식의 지적재산권화에 소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토착민 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화 요구

- 우리나라는 토착민 지식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

7) 산림패널 관계

- 선진국들이 산림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무연계에 긍정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각국의 보전의 무 강화 및 개발권 저해를 우려, 산림과 생물다양성 협약의 직접연계에 반대입장

- 우리나라는 산림패널과 생물다양성과 직접 연계에는 소극적 입장

- 산림의 보전측면 강조시 산림자원 이용 저해 우려
- 산림문제는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Forest products의 이용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Multi-function)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가입 현황

1) 가입현황 및 의의

- 생물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전과, 인류복지의 기반이 바, 그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함.

- 94. 10. 3. 비준서 기탁

- 제1차 당사국총회(1994.11, 바하마)에 협약당사국으로 참가
- 제2차 당사국총회(1995.11.6-17, 자카르타) 참가
- 제3차 당사국총회(1996.11.4-15,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

※ 한국의 생물다양성 현황

- 한국의 생물다양성 조사는 대부분 여타 국가

- 들과 마찬가지로 미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이 알려져 있 지 않음(기록된 종은 동물 약 18,000 종, 식물 7,000종)
- 전세계적으로 기록된 생물종은 약 150만종, 사실상 8백만~1,300만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 2) 가입에 따른 의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국가계획 및 전략수립
 - 우리나라는 97.12.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98.1. 생물 다양성협약 사무국에 통보
 - 분담금 납부의무
 - 우리나라는 97년중 5만불의 의무분담금과 5만 불의 자발적 분담금(사업분담금)을 납부
 - 그외, 생물다양성 협약은 현재 개념위주의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의무 미발생
 - 향후 당사국총회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 정립 예상

표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이용 관련법령

근 거 법	주무부처	목 적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오염방지, 보전관리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방지, 보전관리
수질환경보전법	〃	공공수역 수질오염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분뇨처리시설, 오수정관 관리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기준 관리제도
환경정책기본법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ESSD 규제관리, 지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시설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지원, 보급
자연공원법	행정자치부	자연풍경지(공원)보전, 적정이용
문화재 보호법	문화관광부	문화재보전(명승지, 천연기념물)
도시공원법	건설교통부	도시공원보전, 관리
도시계획법	〃	도시환경보전, 무작위개발방지
산림법	산림청	산림자원보전 및 이용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야생조수 보호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전 및 이용
약사법	보전복지부	의약품, 관련동식물 관리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부	환경친화적개발, 생물자원 현지외 보전관리 및 이용
환경친화적산업구조 조정촉진법	산업자원부	환경친화적 청정기술개발촉진 및 산업구조조정

2. 의정서 추진 배경 및 경과

- 1)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의 국가간 이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관리, 예방하는 한편, 이러한 관리조치가 유전공학제품의 국제거래를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
- 2) 1992. 6. 브라질 리우 개최 UN환경 및 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Rio "Earth Summit")가 채택한 의제(Agenda21)의 16장은 생명공학 기술의 환경친화적 관리(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Biotechnology)를 규정
- 3) 1994. 11. 바하마 개최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COP)는 유전자 재조합 생물(LMOs)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기 목적으로 생명공학 안전성 전문가 회의(GOE : Open-ended Ad hoc Group of Experts on Biosafety) 개최를 결정
 -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안전이동, 조작, 사용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지침의 필요성과 형태 논의
 - 생물학적 안전성 분야에서의 현재까지의 지식, 경험, 법규를 고려하여 제2차 COP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제2차 COP에서 지침의 필요성과 형태에 대한 결론에 도달
- 4) 상기 전문가회의(GOE)의 기초자료 작성은 위해 1995. 5. 카이로에서 1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Panels of 15 Government-nominated Experts)이 개최되어 전문가회의(GOE)의 기초 자료 마련
- 5) 1995. 7. 마드리드 개최 GOE에서 87개국 대표 181명 등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 하기 결론 도출하고 제2차 COP에 보고
 - 생물학적 안전성의 필요성 인정
 - 형태에 대한 계속적 논의를 위해 실무그룹의 결성 필요
 - 의정서 마련과 병행하여 UNEP 지침의 조속한

채택 필요

-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에 LMO의 전반적인 활동, 국경이동, 사전동의절차 등의 내용 포함 필요
- 6) 1995.11. 자카르타 개최, 제2차 COP은 1998년 까지 의정서 제정을 결정하고 동 의정서 작성은 위한 실무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설치를 결정
- 7) 이후, 4차례의 실무회의 개최
 - 제1차 : 1996. 7.22-26, 덴마크 아루스
 - 제2차 : 1997. 5.12-17, 캐나다 몬트리올
 - 제3차 : 1997.10.13-17, 캐나다 몬트리올
 - 제4차 : 1998. 2. 5-13, 캐나다 몬트리올

3. 협약의 목표

- 1) 생명공학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인간건강에 대한 안전을 확보
- 2) 개도국들은 상기 목표에 사회·경제, 윤리적 복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기를 희망

4. 협약안의 주요내용

- 1) 사전통보승인(Advance Informed Agreement : AIA) 절차
 - AIA를 위한 통보(제4조)
 - 주요내용은 수출국이 서면으로 Annex상의 필수제공정보를 포함하여 수입당국에 LMO 수출사실을 통보
 - 통보에 대한 대답(제5조)
 - 수입국이 합리적 기간내에 통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수출국이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 수출국에 통보
 - AIA의 결정절차(제6조)
 - 수입국은 통보의 접수후 지정된 기간내에 결
정사실을 통보함. 결정내용은 하기와 같음.
 - 정사실을 통보함. 결정내용은 하기와 같음.
 - 조건부 혹은 무조건부 수입승인
 - 수입금지
 - 추가정보요구, 반응기간 연장 요구 등
 - AIA결정의 재검토

정 보

- 수입국 결정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을 시 수출국은 결정 재고 요청 가능
 - 상황의 변화가 있을시 수입국도 결정의 재검토 실행 가능
- 2) 기타 주요조항
- 약식절차 : 위험하지 않은 LMO, 동종 LMO의 같은 국가로의 계속된 수입 등의 경우 AIA의 약식절차 적용 가능(제9조)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수입국은 AIA 결정의 기초로서 LMO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행(제 12조)
 - 기타 무역관련조항 : 비당사국(제23조), 불법교역(제25조), 사회경제적 고려(제26조), 배상과 보상(제27조) 등
- 의정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동향
1. 제1차 실무회의(96.7.22-26, 덴마크 아루스)
 - 1) 생명공학제품의 무역규제와 WTO 규정과의 조화 등 국제법적 검토
 - 개도국 : 사전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 규제조치 도입 주장
 - 선진국 : WTO 규정과의 조화주장
 - 2) AIA절차에 대한 기본적 논의
 - 3) 의정서 체계
 - 개도국들은 LMO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려 및 책임과 보상 조항 등의 의정서내 도입을 주장
 2. 제2차 실무회의(97.5.12-17, 몬트리올)
 - 1) 사전통보합의(AIA) 절차
 -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의 적용 경우, AIA의 적용범위, AIA의 구체적 시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
 - 2) 위험평가 및 관리
 - 위험평가의 실행주체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논의
 - 3) 개도국 제기조항
 - 책임과 보상, 사회·경제적 고려, 재정문제 등
- 개도국 제기 조항을 차기회의부터 본격적 논의 키로 결정
3. 제3차 실무회의(97.10.13-17, 몬트리올)
- 1) 개도국 제기조항 등 새로운 조항의 수용
 - 사회·경제적 고려, 책임과 보상 등 개도국 제기조항과 그외 불법교역, 비당사국, 무차별 등 조항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의정서 조항으로 새로이 수용
 - 2) 의정서 기본골격 완성
 - 각국의 서면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43개 조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축약초안(Consolidated Draft)을 마련
 - * 사전 서면제출내용과 실무회의시 논의내용 등을 실질내용에 대한 토의없이 축약초안에 모두 포함
 - 3) AIA절차의 세분화
 - 통보, 확인, 수입국의 결정요소, 결정의 재검토 등 AIA절차에 대한 구체항목별 논의
 4. 제4차 실무회의(98.2.5-13, 몬트리올)
- 1) 기준 초안의 축약화
 - 기준 초안의 여러 대안(Option)을 가능한 한 한가지 Option하에 Bracket으로 정리하는 축약작업 진행
 - 2) 기본 개념규정의 명확화
 - 협약과 AIA절차 적용대상 범위(3조), LMO의 용어정의(2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초안조항의 구체화
 - 3) 탄력적인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완화조항 구체화
 - 약식절차(9, 10조), 양자·다자협정(11조), 수입국의 일방적 선언 등을 의정서내에 수용하여 의정서 적용에 대한 각국의 재량권을 확대
 - 4) 개도국 요구 조항의 구체화
 - 3차회의시 의정서내 포함을 결정한 “사회·경제적 고려”, “책임과 보상”등의 조항이 각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여러 Option으로 정리됨.
 - * 동 조항에 대한 개도국들의 요구가 구체화됨.

■ 우리나라 관련사항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기본입장

- 1) 우리나라에는 현재 생명공학제품 수입국의 입장이나 향후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3-2007년 사이에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도 몇몇 생명공학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따라서, 수출국에 대한 의무의 지나친 강화를 방지하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출비중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생명공학제품의 교역상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의 촉진 등이 우리의 기본입장임.
- 2) 그러나, 생명공학제품의 도입에 따른 농촌 생태계 및 농촌사회 변화 등 사회·경제적 고려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연구와 사전 대비가 필요. 또한, 생명공학제품의 이동, 사용, 취급 등에 있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법령, 지침 등 제도 정비와 위험평가등 안전성 제고 기술에 대한 능력형성 및 국민의 인식제고 등이 긴요

2. 국내 이행현황

1) 생명공학 관련 국내규범 현황

- 과학기술부 : 생명공학 육성법 및 그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
- 국회 :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 구성
- 회장 : 이상희 의원
- 생명공학안전윤리법 입안증

2) 향후 조치사항

- 의정서 발효를 대비하여, 의정서 국내 실행기관(Competent Authority) 및 연락기관(Focal Point) 지정과 국가별 실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

III.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개요

1. 공식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일명 워싱턴 협약

2. 채택 배경 및 의의

- 1) 동·식물의 남획으로 인한 멸종 가능성 증대에 대한 우려 증폭
- 2) 미적, 과학적, 문화적, 휴양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야생 동·식물 가치 인식
- 3)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동식물의 종을 보호할 필요성 증대

3. 채택 및 발효 경과

- 1) 73.3.3.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
- 2) 75.7.1. 협약 발효
- 3) 93.7.9. 우리나라 협약가입서 기탁(93.10.7.발효)
- 사향, 응답에 대해 3년간 유보(96. 10. 7. 유보기간 만료)
- 4) 98. 3. 현재 140여개국 가입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 UNEP, 스위스 제네바)

4. 협약의 목표

남획 및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 협약 주요내용

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부속서별 수출·수입증명서 발급요건을 규정(제3조~5조)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제3조)

- 1) 대상 : 코뿔소, 호랑이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야생동식

정 보

물 및 그 파생품

- 2)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

2. 부속서 I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제4조)

- 1) 대상 : 사향 노루(musk deer),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
- 2)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일정요건에 따른 수출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의 확인절차 불필요)

3. 부속서 II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제5조)

- 1) 대상 : 개별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야생동식물중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
- 2) 거래허가 : 동 요청국과의 거래시 부속서 II에 준하는 제한

4. 비당사국과의 무역(제10조)

비당사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제7조)

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

6. 당사국이 취할 조치(제8조)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 행정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제9조)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

-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

■ 협약체결 이후의 동향

1. 개요

동 협약은 발효이후 상당기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환경보호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됨.

- 특히 92.6. 브라질 리우에서 서명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챕터은 유전자원 및 종의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2. 무역규제 관련 동향

- 1) 협약의 이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협약 비가입국 및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가입국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결의
- 2) 미국은 92. 11. 펠리수정법을 개정하여 CITES 협약정신의 비준수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대상을 여하한 제품(any products)으로 확대
- 동 법은 CITES 등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의 위반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위해 78년 Pelly 상원 의원이 제안
- 94. 8. 미국은 협약이행의 태만을 이유로 대만에 대해 동 펠리법을 적용, 2천만불 상당의 무역규제 조치 발동-97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NGO의 펠리청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사가 현재 진행중 .동전 관련 97. 12. 미국 관계부처 실무자 방한

3. 최근 당사국 총회 논의동향

- 1) 제8차 CITES 당사국 총회(92. 3. 2-13, 교토)
○ CITES 협약 비가입국으로 하여금 하기 자료의 정기적 제출 촉구
- CITES 협약상 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의 동·식물 수출입 허가증명서 발급 담당 비당사국 기관
- 특정 동·식물의 수출이 해당종의 생존을 위

협하지 않음을 판단, 권고할 수 있는 과학기관의 관련자료

※ 당사국에 대해 상기 결의안 비이행 비당사국으로부터의 관련물품 통관거부의무 부과

- 기존 협약 부속서상 동·식물 분류기준이 적절치 못함을 인정하고,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동기준의 개정안 초안을 검토, 차기 당사국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결정

2) 제9차 CITES 당사국 총회(94.11.7-18, 미국 Fort Lauderdale)

-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9개국과 WWF, Traffic 등 NGO가 공동제안한 호랑이 보호 결의문 채택

- 서각관련 별도 결의문도 채택

- 기타 아래사항 결정

- 협약 부속서의 새로운 수록기준 채택
- 상임위원회 확대(6개국에서 11개국으로)

3) 제10차 당사국 총회(97.6.9-20, 짐바브웨 하라레)

- 곰 부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
- 우리국민의 응답소비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동결의안 제출
- 전통의약과 CITES 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통의약 관련 결의안 채택
-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주장을 수용, 일정한 조건하의 상아무역 허용 결정

■ 우리나라 관련사항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기본입장

-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환경보전 노력에 불참한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 불식
-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협약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무역제재 압력 회피
- 3)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멸종위기 종의 불법 국외반출 억제
- 4) 전통의약분야의 응답, 호골 등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사용 억제와 대체원료 개발 지원

2. 가입 현황

1) 가입배경 및 의의

- 선진국 및 환경 NGO로부터 전통의약품 등에 의 CITES 품목 사용에 대한 비난 증대 분위기 불식과 92년 UNCED회의 이후 고양된 국·내외의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을 위해 93. 7. 협약 가입
 - 1979년 이후 CITES 사무국,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야생동물기금(WWF) 등이 수차 가입 요청
 - CITES 사무총장 방한(86. 3, 89. 4) 시 우리의 조속 가입 요청
 - 90. 10.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총재(필립공, 영국여왕 부군), 우리 대통령 앞 서한으로 협약 가입 요청 (대통령 명의 서한으로 두차례에 걸쳐 협약 조속가입 약속)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의 비가입국에 대한 미국, EU 등 선진국의 무역제재 압력 회피 필요
 - 미국의 Pelly법에 의한 야생동식물 불법교역국에 대한 무역제재 압력 증가
 - 92. 3. 제8차 당사국총회, 의정서 비준수 비당사국에 대한 당사국의 무역규제 촉구

2) 협약가입에 따른 의무

- 협약규정 및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의 준수를 위한 국내조치 및 위반된 거래의 금지·처벌 등에 관한 국내입법 조치
- 부속서상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동 내용, 사무국 제출
- 분담금 납부
 - 사무국 운영경비를 개별 당사국의 유엔 분담금 비율에 따라 납부

3. 이행현황

1) 정책 및 조치

- CITES협약의 이행사항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내법 수립 및 시행
- CITES협약 및 부속서의 주요조항이 개정될 시동 내용을 국내법령 개정을 통해 수용

정 보

-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 CITES협약 위반 사범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한 단속 강화
- 2) 관리당국 및 국내법 현황
- 관리당국

구 분	관理당국	과학당국
일반 동·식물	환경부 자연생태과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
약재 동·식물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
조류 및 포유류	산림청 국제협력과	산림청 보호과
고래목 및 수산생물	환경부 자연생태과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수산부)

* 주무 관리당국(Focal Point) : 환경부 지구 환경과

- 관련 국내법 현황

-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 규제대상 종의 수출입시 승인규정 및 위반자의 처벌
 -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
 - 조수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불법 포획·채취 금지
 - “약사법”(보건복지부)
 - 호골·서각의 수입·유통·진열·제조금지
 - 불법 의약품의 폐기명령

IV. 습지보호협약(Ramsar 협약)

■ 개요

1. 공식 명칭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2. 채택 및 발효 경과

- 1) 71.2. 이란 Ramsar에서 채택(75.12. 발효)

- 이후 2차례 부분 개정(82.12. 87.5)
- 2) 가입국 현황(98.3. 현재)
 - 미·일·중·러 등 106개국(지정습지 : 903개 소 6천7백만ha)

3. 협약의 목표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

4. 협약 사무국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랑

■ 주요내용

1. 습지의 지정(제2조)

- 1) 협약가입시 Ramsar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
- 2) 습지는 천연 또는 인공의 하구습지·만·갯벌 등 간조지 수심 6미터 미만의 해역, 또는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6미터를 넘는 해역도 포함.
- 3) 동 습지 선정시 생태학·식물학·동물학·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

2. 자연보호구의 설치(제4조)

Ramsar 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nature reserves)를 설치

3. 사무국의 활동(제8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Ramsar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국과 상호 교환

4. 발효 및 폐기(제10조)

각 당사국의 비준서 기탁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발효한 날로부터 5년 기간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 가능

■ 협약 체결후 동향

- 1) 동식물 서식처 보호목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협약이나 80년대까지는 활동 저조
- 2) 최근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협약으로 대두
 - 90년대 들어 가입국 수 급증 (90년의 60개국에서 최근 106개국으로 증가)
 - Ramsar 습지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관련 논의가 활발
 - 습지보전기금(Wetland Conservation Fund) 설립(90년), GEF와의 연계 방안 모색 등

■ 우리나라 관련 사항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기본 입장

-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협약상 의무에 따라 대암산 용늪을 습지목록에 등록
- 2) 우리나라의 협약에 대한 기본 입장
 - 우리나라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적 환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습지 보호 계기를 마련한 바, 동 협약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하고 국내 습지 보호를 위해 협약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2. 가입현황

1) 가입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는 97.3.28 UNESCO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 협약에 따라 기탁일로부터 4개월 후인 97.7.28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는 동 협약 가입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 정상부근의 용늪을 지정하여 “국제 중요 습지 목록”에 등록
-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물새 서식처 및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동 협약 가입으로 습지보호를 위한 자료

수집,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에 있어서 타 체약국 및 사무국과의 협조가 용이하게 되었음.

2) 가입에 따른 의무

- 1개이상 습지등록 및 국내 자연보호구 지정·관리
- 자연보호구에 대한 가입국의 협약상 의무규정은 없으나, 당사국회의시 관리계획 수립, 관련 입법 등을 각국에 권고
-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 계획 수립·이행 및 국제협력 증진
- “현명한 이용”은 ‘현세대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용(sustainable utilization)을 의미(87년 총회권고)
- 협약 분담금 납부
- 책정방식 : 사무국 예산액을 각국의 유엔분담율에 따라 납부(98년 예상 분담금 : Sfr27,141)

3. 이행현황

1) 정책 및 조치

- 국내 습지(Ramsar 습지포함) 보호대책 마련
- 환경부와 산림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준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과 조수보호구를 동 협약가입 이후 습지관리 체제로 활용계획. 관련법령 : 습지보전법(‘98현재 국회 계류중),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령에 관한 법률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을숙도(부산), 대암산 지역(철원), 낙동강 하구 등 8개지역
- 조수 보호구 : 한강하구, 천수만, 철원 등 560개 지역
- 추가적인 습지 등록
- 98. 3. 현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람사협약상의 습지로 등록 추진중